

제296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  
[2023. 4. 18.(화) 10:00]

서울특별시 강서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3. 4. 18.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행정·재무위원회

# 서울특별시 강서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3년 4월 18일

전문위원 장 석 현

## 1. 회부경위

- 가. 의안번호: 2023 - 48
- 나. 발 의 자: 고찬양 의원 외 4명
- 다. 발의일자: 2023년 4월 7일
- 라. 회부일자: 2023년 4월 10일

## 2. 개정이유

강서문화센터 명칭 변경 및 염창 문화예술창작공간 운영 종료에 따른 조례 내 문화시설 범위를 수정하고 관람료 감면 규정 등 운영 전반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여 효율적인 시설 관리를 추진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관내 문화시설의 범위 및 설치 수정(안 제3조)
  - 강서문화센터의 강서아트리움 명칭 변경, 염창 문화예술창작공간 삭제
- 나.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결제 감면 규정 삭제(안 제18조)
- 다. 구청장 또는 승인을 받은 공연장 사용자의 관람료 징수 신설(안 제18조)
- 라. 관람료 반환 규정 신설(안 제18조의2)
- 마. 관람료의 할인 관련 단서 조항 신설(안 제19조)
- 바. 기타 문화시설 운영에 필요한 별표 서식 정비(별표 1 ~ 별표 6)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

나. 협조부서: 문화체육과

다. 입법예고(2023. 4. 12. ~ 2023. 4. 17.) 결과: 의견없음

## 5. 검토의견

가. 개정 취지

- 본 개정안은 관내 문화시설의 명칭 변경 및 운영 종료 등의 사유를 반영하여 조례 내 문화시설의 범위를 수정하고 운영 전반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여 효율적인 시설 관리를 추진하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 내용

- 안 제3조는 시설 변동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내 문화시설 범위를 수정함  
- 강서문화센터의 강서아트리움<sup>1)</sup> 명칭 변경, 염창 문화예술창작공간<sup>2)</sup> 삭제

### 1) 강서아트리움 현황

- 위 치: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로공원로 195(화곡1동)
- 규 모: 지하2층/지상5층(연면적 4,228.86㎡, 대지면적 1,246.2㎡)

구분	세부시설 설치(안)	면적(㎡)	시설전경
5층	사무실, 문화강의실, 공용면적	445.79	
4층	다목적실, 무용연습실, 음악연습실	499.16	
3층	공연장	415.23	
2층	공연장	597.86	
1층	로비, 갤러리, 수유실, 안내실	496.90	
지하1층	지하주차장, 방재실, 미화원휴게실	915.34	
지하2층	지하주차장, 전기실, 기계실, 발전기실	858.08	

※ 강서아트리움 개관: 2023. 5. 3.(수) 예정

### 2) 염창 문화예술창작공간

- 위 치: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59다길 80(염창동)
- 폐지일자: 2023. 3. 9.(목)
- 사 유: 건축물 노후화로 인한 운영 종료

- 안 제18조 ③항은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을 말한다) 결제에 관한 감면 적용 유효 기간의 종료<sup>3)</sup>로 인하여 해당 관람료 경감 규정을 삭제하였고, 구청장이 직접 기획하거나 주최하는 공연에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
- 안 제18조 ④항은 공연장 사용자는 관람료 감면 및 관람권 발행에 관해 사전 협의를 거친 후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관람객으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
- 안 제18조의2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sup>4)</sup>에 따라 납부된 관람료는 납부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도록 하는 반환 규정을 마련함
- 관람료 할인 관련 단서 조항 신설 및 기타 시설 운영에 필요한 서식 현행화(별표 1 ~ 별표 6) 등 제반 사항 정비

3) 서울특별시 강서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부칙 제2조(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결제에 대한 감면 적용 유효기간)  
: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결제에 대한 감면 개정규정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4)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2-25호, 2022. 12. 28. 시행) 공연 관람료 환급

- 가. 공연이 취소되거나 관람일이 연기된 경우
  - 공연업자의 귀책사유로 취소된 경우: 입장료 환급 및 입장료의 10% 배상
- 나. 관객의 환급요구가 있는 경우
  - 공연일 10일전까지: 전액 환급
  - 공연일 7일전까지: 10% 공제 후 환급
  - 공연일 3일전까지: 20% 공제 후 환급
  - 공연일 1일전까지: 30% 공제 후 환급
  - 공연당일 공연시작 전까지: 90% 공제 후 환급

## 다. 종합 의견

- 본 개정안은 기존 강서문화센터의 이전 및 강서아트리움으로 명칭 변경과 건축물 노후화로 용도 폐지된 염창 문화예술창작공간의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고 기타 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안을 보완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 관람객으로부터 구청장 등의 관람료 징수 가능 조항을 신설하였고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의 관람료 감면 규정 삭제 및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환급 규정 정비 등 현재 시설 운영 상황에 적합하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판단됨.

□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시키고 국민의 문화 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시설을 설치하고 그 문화시설이 이용되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건축물에는 문화시설을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문화시설의 관리를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별표 1]

서울특별시 강서구 문화시설(제3조 관련)

명칭	시설명	기능	위치
박물관	허준박물관	허준기념실, 체험공간, 시청각실, 약초공원 등	서울특별시 강서구 허준로 87 (가양동, 허준박물관)
미술관	겸재정선미술관	기획전시실 I · II, 겸재정선기념실, 다목적실 등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47길 36(가양동, 겸재정선미술관)
문화복합 시설	강서아트리움	공연장, 갤러리, 다목적실, 프로그램실 등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로공원로 195 (화곡동, 강서아트리움)
문화복지 시설	곰달래 문화복지센터	도서관 등 복합문화복지시설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5길 50 (화곡동, 곰달래문화복지센터)
문화예술 창작공간	방화 문화예술 창작공간	창작실 및 부속시설	서울특별시 강서구 금강화로 162(방화동)

[별표 2]

문화시설 사용료 및 수강료 (제13조 관련)

시설명		1회이용 기준시간	사용료 및 수강료	비 고
허준 박물관	시청 각실	3시간	130,000원	시간 초과 시 1시간당 30,000원
	체험 교육실	3시간	100,000원	시간초과 1시간당 30,000원
	기획 전시실	1일	100,000원	진열장 1일 1개 사용료 10,000원 진열장 전체 1일 사용 50,000원
겸재정선 미술관	다목적실 (회의 등)	3시간	130,000원	시간 초과 시 1시간당 30,000원
	다목적실 (전시)	1일	100,000원	진열장 1일 1개 사용료 10,000원
강서 아트리움	공연장	1회	130,000원	<기본시설> 1. 기본 사용시간은 1회 3시간 2. 기본시간 초과 시, 1시간당 30,000원 가산 (초과 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시간으로 계산함) 3. 일요일, 공휴일 사용의 경우 사용료 총액에 30%를 가산
	갤러리	1일	100,000원	
	다목적실	1회	50,000원	
	무대조명	1회	20,000원	<공연장 부속시설> 1. 기본 사용시간은 1회 3시간 2. 기본 시간 초과 시, 1시간당 5,000원 가산 (초과 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시간으로 계산함)
	음향시설	1회	10,000원	
	무대장치	1회	10,000원	
	분장실	1회	10,000원	
	냉난방비	1회	10,000원	
	피아노	1회	50,000	
조율비 별도(대관자 부담) ※수탁자가 정한 지정조율사가 조율함				
곰달래 문화복지센터	강 당	3시간	150,000원	시간 초과 시 1시간당 30,000원

시설명	기능	1회이용 기준시간	사용료 및 수강료	비 고
방화 문화예술 창작공간	창작실	1월	5,000원 (3.3㎡당)	사용료 이외의 발생비용은 별도 계약서에 의함
공 통	문화강좌	1월	50,000원 이하	프로그램별 주 1회 내지 주 5회 기 준
비 고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 2. 주차료

구분	주차요금	비 고
일반 차량	10분당 500원 (1일 주차요금 30,000원)	-시설이용차량 (공연, 전시, 문화강 좌 등): 3시간 무료
대관 관계자 차량	공연 또는 전시 당일 공연장 2대, 전시장 1대 무료	

1. 장애인, 국가유공자, 경차 등 감면 대상차량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정한 바에 따라 감면한다.
2. 2개 항목 이상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1개 항목만 적용한다.
3. 관용차량, 입주시설 상주차량, 회의 및 시설 유지보수 등 공무를 위한 수탁자의 확인을 받은 차량은 면제할 수 있다.
4. 단, 곰달래문화복지센터의 주차료는 별도 시설 규정에 의한다.

[별표 3]

수강료 및 공연 관람료 반환기준(제14조의2, 제18조의2 관련)

1. 수강료

구 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학습자 본인의 요청에 의한 경우	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	학습시간의 1/3경과 전	수강료의 2/3 해당액
		학습시간의 1/2경과 전	수강료의 1/2 해당액
		학습시간의 1/2경과 후	반환하지 아니함
	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	교습개시 이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수강료(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 적용)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강사 및 학습장소 등 기타 사유로 인한 경우		학습을 할 수 없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
비 고		'학습시간'은 등록기간 중의 총 학습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학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 곰달래문화복지센터의 수강료 반환기준은 각 기능별 시설의 개별 조례에 의함.

## 2. 공연 관람료

구분	반환내용	비고
<p>1) 공연이 취소되거나 관람일이 연기되어 고객이 관람료의 환급을 요구할 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연업자의 귀책사유로 취소된 경우</li> <li>-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경우</li> </ul> <p>2) 관객의 환급요구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연일 10일전까지</li> <li>- 공연일 7일전까지</li> <li>- 공연일 3일전까지</li> <li>- 공연일 1일전까지</li> <li>- 공연당일 공연시작 전까지</li> <li>- 단, 공연 3일전까지는 예매 후 24시간 이내 취소 시</li> </ul> <p>3) 공연내용이 계약과 다른 경우 (중요 출연자 교체, 예정 공연시간 1/2이하 공연 등)</p> <p>4) 공연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공연이 30분 이상 지연된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체 공연 관람</li> <li>- 공연 중단</li> </ul> <p>5) 공연 관람권을 구입한 자가 관람시간 표기 오류로 인하여 공연을 관람하지 못한 경우</p> <p>6) 전염병, 전염성 독감 등과 같은 사유로 공연을 관람하지 못한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관람료 환급 및 관람료의 10% 배상</li> <li>-관람료 환급</li> <li>-전액 환급</li> <li>-10% 공제 후 환급</li> <li>-20% 공제 후 환급</li> <li>-30% 공제 후 환급</li> <li>-90% 공제 후 환급</li> <li>-전액환급(미운영일은 시간 계산에서 제외)</li> <li>-관람료 환급 및 관람료의 10% 배상</li> <li>-관람료의 10% 환급</li> <li>-관람료 환급 및 관람료의 10% 배상</li> <li>-관람료 환급 및 관람료의 20% 배상</li> <li>-후일 공연기회 부여 또는 위약금 없이 취소</li> </ul>	<p>* 관람권을 할인 판매한 경우 거래가격 기준으로 하되, 이는 판매자가 입증함</p> <p>* 전염병, 전염성 독감 등은 관람객이 입증</p>

[별표 4]

문화시설 휴관일(제16조 관련)

시설명	휴관일	비고
허준박물관	매주 월요일, 1월1일, 설날, 추석	
겸재정선미술관	매주 월요일, 1월1일, 설날, 추석	
강서아트리움	매주 일요일, 공휴일	
방화 문화예술 창작공간	매주 토·일요일, 공휴일	창작실 휴관일은 별도 계약서에 의함

※ 곰달래문화복지센터의 휴관일은 각 기능별 시설의 개별 조례에 의함

[별표 5]

문화시설 관람 및 이용시간(제17조 관련)

시설명	구분	관람 및 이용시간	비고
허준박물관	평일	10:00~18:00	동절기(11-2월) 17:00까지
	토·일요일· 공휴일	10:00~17:00	
겸재정선미술관	평일	10:00~18:00	동절기(11-2월) 17:00까지
	토·일요일· 공휴일	10:00~17:00	
강서아트리움	평일	10:00~20:00	
	토요일	10:00~17:00	
방화 문화예술 창작공간	평일	10:00~18:00	창작실 이용시간은 별도 계약서에 의함

[별표 6]

문화시설 관람료(제18조 관련)

시설명	구분	구분기준	금액		통합관람 금액	
			개인	단체 (20인 이상)	개인	단체 (20인 이상)
허준박물관	어른	· 19~64세	1,000	700	1,300	1,000
	초·중·고 및 군경	· 7~18세 청소년 · 하사 이하의 군인(전투경찰, 의무경찰 및 경비교도를 포함한다)	500	300	700	500
겸재정선 미술관	어른	· 19~64세	1,000	700	1,300	1,000
	초·중·고 및 군경	· 7~18세 청소년 · 하사 이하의 군인(전투경찰, 의무경찰 및 경비교도를 포함한다)	500	300	700	500

※ 통합관람권 유효기간은 발권일로부터 1주일 이내로 한다.